

# 영주시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의 안<br>번 호 | 159 |
|------------|-----|

제출년월일 : 2004.

제출자 : 영주시장

## 1. 제안이유

관련법률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및 장애인의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함.

## 2. 주요내용

- 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
- 나. 장애인의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차량으로 보아 자동차세 면제혜택을 부여 코자 함(안 제3조제1항)
- 다. 종합토지세 경감액은 대상토지의 과표액에 경감비율을 곱한금액으로 명시함.(안 제30조의2)

## 3. 자치법규안 : 불임

## 4. 신구대비표 : 불임

## 5. 참고사항

- 가.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안 통보(도 재정파-9036(2004.08.31) 1부
- 나.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 통보(도 재정파-12465(2004.11.02) 1부.

##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하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장애인의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을 “장애인의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

우자, 장애인의 적계존·비속"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이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대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부 칙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현 행   | 개 정   |
|---|---|
| <p>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1. ~ 4.(생 략)<br/>③ (생 략)</p> <p>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2조제2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 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lt;신 설&gt;</p> | <p>.....</p> <p>1. ~ 4.(현행과 같음)<br/>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p> <p>.....</p> <p>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p> <p>.....</p> <p>제30조의2(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에 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대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p> |

6  
"위대한 경복 함께 하는 300만"

## 경상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 통보

1. 행정자치부 세제과-2271(2004. 10. 28)호와 관련입니다.
2.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불임과 같이 통보하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금년말까지 시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함으로써 2005. 1. 1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시군에서는 조례개정 일정과 개정현황을 2004. 12. 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일 : 1. 2005년 시행 시군세감면조례종개정조례안 표준안 1부.  
2. 감면조례 개정사유 1부. 끝.

### 경상북도지사

관인생략

수신자 시군(세정과)

★지방행정주사 전갑원 재경교장 11/02  
박현규

협조자 지방세무주사보 배경진 지방행정주사 최현찬 지방행정주사보 장진석

김시용 지방행정사무관 조자근 법무담당관 최기환

시행 재정과-12465 ( 2004.11.02. ) 접수 세무과-7612 ( 2004.11.02. )

## '05년시행 감면조례표준안 개정내용

### □ 그간 추진경위

- '04. 4월 ~ 7월 : 개정계획 수립 및 개정의견 수렴(중앙·지방)
- '04. 7.14 ~ 7.16 : 시도 감면조례담당자 합동토론회 개최
- '04. 9월 ~ 10월 : 1차 토론회에 대한 추가의견 수렴

### □ 개정내용

#### 1.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감면 확대

| 면 대   | 개 정 안                  |
|---|------------------------|
|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br>하는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br>부동산중 대부금 초과부분에<br>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면제<br><br>※ 대부금 한도내에는 지방세법에서 면제 | 5·18민주유공자도 면제대상에<br>포함 |

#### < 개정사유 >

- 5·18민주유공자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국가대부금으로 취득  
 하는 85㎡이하의 주택은 취득가액이 대부금을 초과하더라도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여 과세 불평형 해소

## 2.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감면대상자 범위 명확

| 현 행   | 개 정 안                               |
|---|-------------------------------------|
| ○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이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br>-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 면제 |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 |
| ○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면제                                      |                                     |

### < 개정사유 >

- 장애인의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 면제혜택 부여

## 3. 국가유공자 등 감면조항 문구 정리

| 현 행   | 개 정 안                        |
|---|------------------------------|
|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br>직계 존·비속 ----- |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 존·<br>비속 ----- |

### < 개정사유 >

-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어 간결화

#### 4.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확대

| 현 행                                      | 개 정 안                                     |
|--|---|
| 평생교육시설용(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등록된 시설은 취득세·등록세 면제 | 등록이전에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면제 |

##### < 개정사유 >

-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이전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도 면제 확대

#### 5.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감면

| 현 행   | 개 정 안         |
|---|---------------|
|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시행으로 취득세·등록세 면제 신설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 | 취득세·등록세 면제 신설 |

##### < 개정사유 >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낙후된 재래시장의 개·보수, 아케이드 설치 등을 국비 또는 시비로 지원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면제혜택 부여

\*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기 면제

## 6. 종토세 감면방식의 구체적 명시

| 현 행                            | 개 정 안                              |
|--------------------------------|------------------------------------|
| 종토세 감면세액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 종토세 경감액은 대상토지의 과표액에 경감비율을 곱한금액을 명시 |

### < 개정사유 >

- 시·군세 및 구세감면조례 일부조항에서는 종토세 감면방식을 특정하지 않아 적용상 혼란이 있으므로 명확화 필요

### 시도 조치사항

- 시도별 개정사항 행자부 제출 : '04.12.20까지
- 자치단체별 입법예고 및 의회의결·공포 : '04.12.31까지
- 시행 : 2005. 1. 1부터

## 00도00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00시 · 군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고령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령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령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령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령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령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고령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장애인의 본인 ·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을 “장애인의

12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제6장 보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00조(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00도00시·군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
|--|---------------------------------------|
|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  |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
| ② 국가유공자등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 ② _____                               |
|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이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존·비속, 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 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의 배우자,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직계존·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차로서(후단생략) | _____                                 |
|  | (현행과 같음)                              |

| 현 행  | 개 정  |
|--|--|
| 제3조(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 제3조(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
|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 ①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
| (후단생략)   | (현행과 같음.)  |
| 제6장 보 칙<br><u>&lt;신설&gt;</u>   | 제6장 보 칙<br>제100조(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br>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위대한 경복 함께 뛰는 300만"



## 경상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안 통보

1. 행정자치부 세제과-1649(2004. 8. 27)호와 관련입니다.

### 2. 관련법률의

명칭변경(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및 위 법률에 의한 대부대상자가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례 개정허가안을 불임과 같이 통보하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임 :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1부. 끝.

## 경상북도지사

관인생략

포항시장, 경주시장, 김천시장, 안동시장, 구미시장, 영주시장, 영천시장, 상주시장, 문경시  
장, 경산시장, 군위군수, 의성군수, 청송군수, 영양군수, 영덕군수, 청도군수, 고령군수, 성주  
군수, 칠곡군수, 예천군수, 통화군수, 울진군수, 울릉군수

★지방행정주사 전강원 지방행정사무관 배병록 재경과장 08/31 박현규

협조자 지방세무조사보 배경점 지방행정주사 최현찬 지방행정사무관 김시윤

시행 재정과-9036 ( 2004.08.31. ) 접수 세무과-6084 ( 2004.08.31. )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http://www.gb.go.kr>  
전화 (053)950-2311 / 전송 (053)950-2319 / [jungw@gb.go.kr](mailto:jungw@gb.go.kr) / 공개

### ○○도○○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도○○시·군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제2항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로 하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 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각호 생략)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